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영리법인 등의 의사록 선서인증 제도 도입〉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90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방식인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방식 중 참석인증은 수수료가 높아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청문인증은 법인 총회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구성원들로부터 일일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다수의 구성원들(특히 지방이나 해외 출타 중인 구성원 포함)로부터 이를 제출받는 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요구되어 고유한 공익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되거나, 인증의 어려움으로 의결권 있는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결권 있는 회원의 확대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총합된 총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의사록 인증방식(법 제66조의2) 이외에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를 통해 총회 의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선서인증 제도(법 제57조의2)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4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공증인이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현행법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6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 ③ (생략) <u><신설></u>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u>

현행	개정안
④ · ⑤ (생략)	<u>하계 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u> <u>따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u>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66조의2제1항¹⁾은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증인의 인증 방법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하되(제66조의2제2항),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제66조의2제3항)으로는 ①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참석인증), ②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1)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청문인증)이 있음.

□ 참석인증의 경우 수수료가 높아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청문인증은 법인 총회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구성원들로부터 일일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의결권 있는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의사록 인증을 위한 사실 확인 방법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 참고로, 현행법 제57조의2²⁾는 선서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인증(예: 사실에 관한 인증, 일반 위임장, 번역문 등에 대한 인증)을 부여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고 서선사실을 적는 인증방법임.

2)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④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사서증서 인 증은 작성자가 작성한 것을 인정함으로써 인 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의사록 인 증은 총회 등의 결 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인 증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면에서 사서증서의 인 증은 작성자가 작성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고, 의사록 인 증은 총회의 결 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있음³⁾.

□ 따라서 의사록의 인 증 방법으로 선서인 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 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공 증”이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사항 또는 이미 확인된 사항에 관하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공 증은 판단행위가 아니고 인식행위의 본질을 가지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된 행위이며, 서면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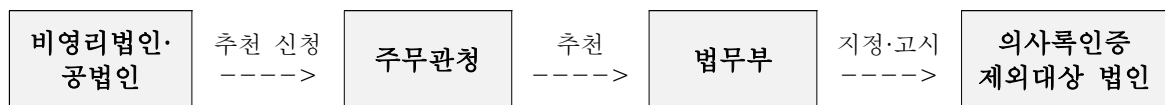
○ 공 증행위는 이미 행해진 사항을 인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창설·변경·소멸되는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다만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공 증된 사항에 대한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는 데에 그 본래의 뜻이 있음⁴⁾.

3) 202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의사록 인 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5

4)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1](2017년 개정판, 법원행정처, p.227.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에 대한 의사록’의 사실의 확인을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의 선서로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의 사실 확인 방법에 비하여 총회 등의 결과가 특정인의 의사표현에 따라 왜곡될 우려가 있어 의사록의 진실성 담보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현행법상 대통령령⁵⁾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고시 절차>



* 출처 : 법무부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인의 의사록 사실 확인 방법 완화하는

5)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 지정·고시는 1년에 4회 이루어지며, 지정·고시의 결과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go.kr, 검색어 : 의사록 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경우라도 그 완화 대상을 “모든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으로 하는 대신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는 등 공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⁶⁾⁷⁾.

- **법무부**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의사록 인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거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총회 출석이사 1인의 선서인증만으로는 의사록에 대한 진실성이 충분히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영리법인 등의 의사록 인증시 선서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9

6)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7) 202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의사록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54.

[참고자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관보고시 내용

●법무부고시 제2024-650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2108. 재단법인 가현신도재단 (Gaheon Sindoh Foundation)

2109.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2110. 광명문화원

2111. 사단법인 광양와이더블유씨에이

2112. 재단법인 국립자연유산원

2113. 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2114. 사단법인 글로벌 최고경영자 클럽 (Global CEO Club)

2115. 단양군체육회

2116. 유성문화원

2117. 대덕문화원

2118.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2119. 대한건설기계협회

2120.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2121. 사단법인 대한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

2122. 든든한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2123. 재단법인 목포문예진흥재단

2124. 사단법인 문경시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125. 재단법인 비엔케이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2126.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2127. 사단법인 세종여성

2128. 사단법인 공익법센터어필

2129. 사단법인 에코나우

2130.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 2131. 사단법인 해피 업 사회복지회
- 2132. 사단법인 행복드림후원회
- 2133. 사단법인 희망365
- 2134.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 2135. 서울특별시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 2136. 서울특별시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조합
- 2137. 세종신용보증재단
- 2138. 세종학당재단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 2139. 안산시체육회
- 2140. 연천군체육회
- 2141. 재단법인 영양군인체육성장학회
- 2142. 재단법인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 2143. 재단법인 유봉교육장학회
- 2144. 의령문화원
- 2145.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 2146. 사단법인 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 2147.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 2148.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 2149.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보건연구재단
- 2150.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 2151. 재단법인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2152.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 2153. 청양군체육회
- 2154. 하남문화원
- 2155.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 2156. 부산항공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 2157. 대월사회적협동조합정검다리
- 2158. 가온누리사회적협동조합
- 2159. 케이시엠교육사회적협동조합
- 2160. 한비 사회적협동조합
- 2161. 운정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정다운정
- 2162. 사단법인 한국와이더블유씨에이연합회
- 2163. 사단법인 한국경음악협회
- 2164. 사단법인 한국고에너지물리학회 (The Korean Society of High Energy Physics)
- 216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근로협회
- 2166.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
- 2167.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2168. 재단법인 홍주문화관광재단
- 2169. 포항문화원
- 2170. 경주문화원
- 2171. 안동문화원
- 2172. 영주문화원
- 2173. 상주문화원
- 2174. 문경 문화원
- 2175. 경산문화원
- 2176. 의성문화원
- 2177. 청송문화원
- 2178. 영양문화원
- 2179. 청도문화원
- 2180. 고령문화원
- 2181. 성주문화원
- 2182. 칠곡문화원

2183. 봉화문화원

2184. 울진문화원

2185. 울릉문화원